



본인확인서 (법인/단체)

▶ 고객작성란

이 확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정기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규정」에 의거 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세법상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작성하신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금융회사는 기재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 고객정보

*첨약서에 기입한 정보와 동일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2 columns: Field Name (e.g., 법인명, 설립지국,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and Input Type (e.g., (한글), (영문대문자)).

* 당사와 거래 시 제공하셨던 기본 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명은 국내법인의 경우,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로 기입해주시고 국외업체인 경우 알파벳 대문자로 해당국가의 정식 영문표기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업체의 법인등록번호는 국내법인이 아닌 경우 설립지 또는 소재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국내법인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II. 고객 확인사항

아래 항목을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V) 상세한 답변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5 rows of questions (e.g., ① 귀 법인은 미국법인에 해당하십니까?) and columns for '예' and '아니오'.

III. 본인 확인

본인은 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귀사에 통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직인 또는 서명)

▶ 회사작성란

* 업무 담당자 및 확인자가 아래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2 columns: Confirmation text (e.g., 위 내용을 고객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and Signatures (접수자, 접수기관, 확인자).



별첨

<유의사항>

본 별첨 페이지는 본인확인서 1면의 2. 고객 확인사항에 기재된 5가지 질의 중 귀 법인이 '예' 라고 표기한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사항입니다. 설명서를 참고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후 안내에 따라서 본인확인서 1면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A. 미국법인, 미국외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외국인 개인주주(실질지배자)가 있는 법인

⑥	귀 법인은 특정미국인에 해당하십니까?	예	아니오
	[아니오]에 V한 경우 해당하는 법인의 분류코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류코드	
⑦	위 ②, ⑥항목에서 [예]에 V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주시고 본인확인서의 [III.본인확인]란의 문구를 확인하신 후에 작성일자, 법인명을 기입하고 법인/법인인감 또는 권한 있는 대표자(작성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가까운 영업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납세의무국가(영문)	납세자 번호 (TIN)	납세자번호 미기재 사유 (미국이외의 국가만 기재)
			<input type="checkbox"/> 미발급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요구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input type="checkbox"/> 미발급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요구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B. 실질적 지배자

⑧	위 ⑤에서 [예]로 표기한 경우 25% 초과 지분을 보유한 해외 납세자를 모두 기재하시고 각 실질적 지배자의 성명, 주소 및 납세자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성(Surname)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영문)	
영문 명(Given name)	조세목적상 거주지국(영문)	납세자번호	납세자번호 미기재사유
			<input type="checkbox"/> 미발급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요구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input type="checkbox"/> 미발급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요구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input type="checkbox"/> 미발급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요구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input type="checkbox"/> 미발급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요구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C. 금융회사

⑨	귀 법인이 '금융회사'인 경우 아래에 요청된 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설립지국(영문대문자)		
	b. 글로벌금융기관등록번호(GIIN)		
	c. 글로벌금융기관등록번호(GIIN)가 없는 경우 귀 법인은 '이행간주 금융기관', '적용 면제 수익적 소유자' 또는 공통보고기준의 목적상 비보고 금융회사(이행간주 금융기관,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와 공통되는 기관 포함)입니까?	예	아니오
	만일 [예]에 V한 경우 해당하는 법인의 분류코드		
d.	만일 [아니오]에 V한 경우 귀 법인이 국내 금융회사 또는 FATCA 협력관할권 금융회사이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되는 부분에 V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1. 한미 정부 간 FATCA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데 있어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다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한 후 18개월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 국내 금융회사 <input type="checkbox"/> 2. 미국과 FATCA 협력 관할권 정부간 FATCA 협정 중 제1호에 상응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FATCA 협력관할권 금융회사		



본인확인서(법인용) 본문 설명서

I. 고객정보

당사와 거래 시 제공하셨던 기본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명은 국내법인의 경우,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로 기입해 주시고 국외업체인 경우 알파벳 대문자로 해당국가의 정식 영문표기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업체의 법인등록번호는 국내법인인 아닌 경우 설립지 또는 소재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국내법인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고객 확인사항

① 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행규정 제 5조 제 4항 제 2목 내지 5목)

- 미국 내에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 가. 미국에 소재하는 법원이 신탁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령 또는 재판을 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
 - 나. 한 명 이상의 미국인이 해당 신탁의 의사결정을 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

③ 금융기관 여부

③에서의 금융기관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유형	설명
예금기관	은행법 제 27조 제 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법인 다만, 은행업무 중 예금의 수입 업무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제외. (이행규정 제 3조 제 3항)
수탁기관	타인의 계좌를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 이 경우 소득의 산정은 산정일 이전 종료되는 회계연도 및 직전 2개 회계연도(기관의 존속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기관의 존속기간)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소득에 대한 산정기준은 동일함.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수탁기관에서 제외. (이행규정 제 3조 제 2항) 1. 보관, 계좌 관리 및 수수료 송금 2. 증권거래 체결 및 가격책정 3. 대출 등 신용공여 4. 주가동락의 차액 및 금융자산의 매매가격차이에 대한 계약 5. 투자자문 제공, 청산결재서비스 6.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서비스
투자단체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요한 영업으로 운영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단체 및 그 단체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주요한 영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그 소득이 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채투자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 (이행규정 제 3조 제 4항) 1. 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외국환, 환전, 유가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2. 타인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관리 3. 그 밖에 타인을 대신하여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
기타특정 보험회사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단체. (이행규정 제 3조 제 5항)

④ 능동적 비금융단체 분류코드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이유로 [아니오]에 V를 기입하신 경우, 아래 해당하는 '능동적 비금융단체의 코드(1~11)를 찾아 기입합니다. 각 항목별로 정의 및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드	유형	설명	근거규정
1	주관상장법인	주관상장법인인 비금융단체인 경우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2호
2	확장된 관계회사그룹	주관상장법인의 특수관계단체인 비금융단체인 경우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2호
3	미국령 소재 단체	비금융단체가 미국령에 설립되고 수취인의 모든 소유자가 그 미국령의 진정한 거주자인 경우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9호 가목
4	정부단체 등	비금융단체가 이행규정 제 21 조 제 1 항의 정부단체등 또는 정부단체등이 완전히 소유한 단체인 경우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3호
5	지주회사/재무센터/ 전속금융회사	비금융단체가 실질적 활동이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 다만, 비금융단체가 투자펀드(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차입매수펀드,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목적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 등을 포함한다)로서 기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4호
6	신생 비금융단체	비금융단체가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다만, 비금융단체의 최초설립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5호
7	청산 또는 조직 변경 중인 비금융단체	지난 5년간 금융회사가 아니었던 비금융단체가 자산을 청산하는 중이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의 운영을 계속 또는 재개하기 위해 사업재편 중인 경우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6호
8	비금융 그룹	비금융단체가 주로 금융회사가 아닌 특수관계단체와 자금제공 및 위험회피목적 거래를 하거나 금융회사가 아닌 특수관계단체를 위하여 자금제공 및 위험회피목적 거래를 하고,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게는 자금 또는 위험회피목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만, 해당 특수관계 단체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야 한다.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7호
9	미국 재무부 규정상 예외 비금융단체	비금융단체가 미국 재무부 규정의 예외 비금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9호 나목
10	비영리법인	비금융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오직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해 거주지 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거나 거주지 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며 전문가조직, 사업자 단체,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단체, 시민단체 또는 오직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해당할 것 나. 거주지 관할권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것 다. 수입이나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가진 주주 또는 구성원이 없을 것 라. 거주지 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해당 비금융단체의 수입이나 자산이 개인 또는 비자선단체에게 분배되거나 개인 또는 비자선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다만, 비금융단체의 자산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의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및 비금융단체가 구매할 재산의 공정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거주지 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비금융법인의 청산 또는 해산 시 비금융단체의 모든 자산이 정부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에게 분배되거나 거주지 관할권의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귀속될 것을 요구할 것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8호



11	능동적 수익을 창출하는 능동적 비금융법인	직전 연도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총 수입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이고, 직전 연도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비금융단체가 보유한 자산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경우	이행규정 제 5조 제 13항 제 1호
⑤	실질적 지배자	이행규정 제 5조 제 10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귀 단체의 25% 초과 지분을 보유한 해외 납세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질의입니다.	

본인확인서(법인용) 별첨 설명서

A. 특정 미국인 여부 - 미국법인 분류코드

⑥	아래 열거된 기관들은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에 정의된 '특정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들'로서 미국 연방세법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래 열거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나]오에 V를 표기한 후 아래 법인유형에 따른 분류코드 중 하나를 기입하고 나머지 별첨은 작성하실 필요 없이 본인확인서 본문의 <본인확인> 문구를 확인하시고 작성일자 및 법인명을 기입한 후 법인직인(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당해 별첨과 함께 당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예]에 V를 표기한 후 ⑥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코드	법인유형	설명	근거규정
A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하나 이상의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회사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1호
B	주권상장법인의 관계회사그룹	위 A의 회사와 동일한 확장계열사그룹(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른)의 계열사인 모든 회사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2호
C	미국 정부기관 등	미국, 미국정부소유기관, 미국정부대행기관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3호
D	미국령 지역 관할정부(기관) 등	미국 주, 미국령/미국 주 또는 미국령의 정치적 하부조직/미국 주, 미국령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의 소유기관 또는 대행기관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4호
E	미국 세법에 따른 면세기구나 또는 퇴직연금	미국 세법에 따른 면세기구나 또는 퇴직연금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5호
F	미국 세법에 따른 은행	미국 세법에 따른 은행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6호
G	미국 세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	미국 세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7호
H	미국 세법에 따른 규제 대상 투자회사 등	미국 세법에 따른 규제 대상 투자회사 또는 미국의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법인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8호
I	미국 세법에 따른 공동투자신탁펀드	미국 세법에 따른 공동투자신탁펀드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9호
J	미국 세법에 따른 조세면세 신탁 등	미국 세법에 따른 조세가 면제되는 신탁 또는 미국 세법에 따른 신탁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10호
K	미국 소재 특정 금융상품 딜러	유가증권, 상품, 파생금융상품(영국원금계약, 선물, 선도, 옵션 포함)의 거래업자로서 미국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11호
L	미국 세법에 따른 중개인	미국 세법에 따른 중개인	이행규정 제 5조 제 5항 제 12호
⑦	귀 법인의 해외납세의무가, 납세자번호 등 빈칸을 기입해 주시고, 본인확인서 본문의 <본인확인> 문구를 확인하시고 작성일자 및 법인명을 기입한 후 법인직인(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당해 별첨과 함께 당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실질적 지배자

⑧	⑤에서 [예]에 V를 표기한 경우로서 실질적 지배자가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귀 법인에 대한 지분을 25% 초과 보유한 해외 납세자의 영문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고 본인확인서 본문의 <본인확인> 문구를 확인하시고 작성일자 및 법인명을 기입한 후 법인직인(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당해 별첨과 함께 당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C. 금융회사 - 금융기관 분류코드

⑨	③에서 [예]에 V를 표기한 경우로서 귀 법인이 금융회사일 경우 기재하는 정보입니다.		
	항목	요건	
a	설립지국	소재국가의 정식 영문표기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b	GIIN	귀 법인이 미국 국세청(IRS)로부터 발급받은 글로벌금융기관등록번호(GIIN) 19 자리가 있으면 해당란에 기입해 주시고 이하 항목에 답변할 필요 없이 본인확인서 본문의 <본인확인> 문구를 확인하시고 작성일자 및 법인명을 기입한 후 법인직인(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당해 별첨과 함께 당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고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c	금융회사유형 (아래 이행간주 금융회사 및 적용면제실질소유자에 해당하는 기관 중 일부는 이행규정상 공통보고기준의 목적상 비보고 금융회사에도 해당됩니다. 상세 내용은 우측 설명 참조)	귀 법인이 아래 열거된 금융기관유형 중 해당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나]오에 V표를 기입하시고 나머지 별첨은 작성하실 필요 없이 본인확인서 본문의 <본인확인> 문구를 확인하시고 작성일자 및 법인명을 기입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당해 별첨과 함께 당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관 중 정부단체 등(이행규정 제 21 조 제 1 항 제 1 호) 다수참여/소수참여 퇴직펀드,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이행규정 제 21 조 제 1 항 제 2 호)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이행규정 제 21 조 제 1 항 제 4 호) 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이행규정 제 21 조 제 1 항 제 5 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행규정 제 21 조 제 12 항 제 1 호)은 공통보고기준의 목적상 비보고 금융회사에도 해당됩니다.	
	코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이행규정 제 22 조 제 2 항 제 1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련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가받고 규제될 것 나. 한국 이외의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대중에 광고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가지지 아니할 것 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웹사이트를 운영하되 웹사이트에서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표시하거나 달리 미국 고객이나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유치하지 않는 경우 2) 주로 한국 내에서 주로 배포되거나 방영되거나 부수적으로 타국에서 배포되거나 방영되는 인쇄매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되, 광고에서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표시하거나 달리 미국 고객이나 미국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하거나 유치하지 않는 경우 라. 거주자가 보유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보고 또는 원천징수 목적 또는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따른 실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자인 계좌보유자를 확인하도록 요구될 것 마. 유지하는 금융계좌 가치의 100분의 98 이상을 거주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할 것 바. 금융회사는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FATCA 비참여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음 각각의 자를 위하여 금융계좌를 개설·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시에는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2) 실질적 지배자가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법인 사. 바의 정책 및 절차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계좌를 소유한다고 확인될 경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 2) 실질적 지배자가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법인 아.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하는 기존계좌 또는 법인이 보유하는 기존계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보고 금융계좌 또는 FATCA 비참여금융회사에 보유한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절차에 따라 기존계좌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정하고 있을 것 자. 이행규정 제 21 조 제 6 항부터 제 8 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퇴직펀드인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인 특수관계법인은 각각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어야 하고 제 1 호 각 목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것 차. 금융계좌 개설 및 유지에 있어 특정미국인이며 거주자인 개인을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지 아니할 것 	



이행 간주 금융 회사	2	지역은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이행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2호): 가. 다음 각각의 금융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은행 2)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상호저축은행 3)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 또는 조합원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이고 총 자산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는 조합원이 없는 협동조합 나. 금융회사가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의 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웹사이트를 통해 최초 금융계좌가 개설되지 아니할 것	라.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1억 75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특수관계법인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억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바. 각 특수관계법인은 한국에 설립 또는 조직되어야 하며, 금융회사인 특수관계법인(이행규정 제 21조 제 6항부터 제 7항까지와 동조 제 8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펀드나 제 3호에 따른 소액계좌 금융회사를 제외)은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소액계좌 금융회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이행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3호): 가. 투자법인이 아닐 것 나. 금융회사 또는 특수관계법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금융계좌 중 금융계좌의 잔액 이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좌가 없을 것	다.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회사와 특수관계법인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	이행규정 제 21조 제 10항의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이행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4호)	
	5	피후원 투자기구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인이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원기관(이하 이행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5호에서 "후원기관"이라 한다)이 되기로 동의한 투자법인(투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행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5호 가목): 1) 미국 국제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을 것 2) 미국 국제청 웹사이트에서 후원기관으로 등록할 것 3) 금융회사 관련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할 경우 2015년 12월 31일 또는 보고 금융계좌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전에 금융회사를 등록할 것	4)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할 것 5)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모든 보고에 금융회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의 식별번호를 포함할 것 6) 후원자로서의 지위를 취소하지 아니할 것
	6	피지배 단체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지배 단체(이행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5호 나목): 1) 미국의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후원기관으로 되기로 동의한 경우 그 미국의 금융회사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는 금융회사일 것 2) 후원기관이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보유자와 수취인을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유지하는 모든 계좌·고객정보/고객식별번호, 고객서신, 계좌잔액, 계좌보유자 또는 수취인에 대한 지급예를 포함한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공통의 전산계좌시스템을 후원기관과 공유할 것	
	7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이행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6호): 가.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법인(투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후원기관이 미국의 금융회사, 정기간 FATCA 협정에 따른 보고 금융회사 또는 FATCA 참여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고,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할 것 다. 금융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법인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할 것 라. 20명 이하의 개인이 금융회사의 채무지분 및 자본지분을 소유할 것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은 제외한다.	1) FATCA 참여 금융회사 및 이행간주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지분 2) 이행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융회사의 자본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본 지분 마. 후원기관은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미국 국제청 웹사이트에서 후원기관으로 등록할 것 2)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하고 금융회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문서를 6년간 보관할 것 3)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모든 보고에 금융회사를 표시할 것 4) 후원자로서의 지위를 취소하지 아니할 것
	8	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이행규정 제 21조 제 11항의 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이행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7호)	
	9	집합 투자기구	한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모든 자본(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지분 포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이행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8호): 가.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 나. 능동적 비금융단체 다.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라. FATCA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10	한시적 채권발행 투자기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다만, 금융회사가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인 경우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이행규정 제 22조 제 3항): 1. 투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할 것 2.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분은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금융회사에 의하여 상환되거나 양도될 것(금융회사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무기명식 지분을 발행하지 않았고,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모든 지분을 상환하거나 유통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침 및 절차를 수립할 것) 3.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지 않은 지분은 FATCA 참여 금융회사, 미국 국제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이행간주 금융회사, 지역은행 등에서만 판매할 것 4. 금융회사가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회사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특정미국인 FATCA 비참여금융회사 또는 하나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한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수동적 비금융법인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의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되도록 할 것 5. 금융회사는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회사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제 3호에 따른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판매사와의 판매계약을 종료시키고 판매사를 통해 발행된 모든 채무지분 및 자본지분을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 전환 또는 양도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국제청에 증명할 것	6.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계좌를 실시할 것 다만 판매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미국법인과 미국 거주 개인에 대한 지분의 발행 및 판매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융회사는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FATCA 비참여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금융계좌를 개설·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가.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시에는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을 포함한다) 나. FATCA 비참여금융회사 다.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이고 거주자가 아닌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 8. 제 7호의 정책 및 절차는 제 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계좌를 소유한다고 확인될 경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제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 9.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일 경우,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FATCA 참여 금융회사, 이행간주 금융회사 또는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일 것
	적용 면제 실질	11	적격 퇴직 연기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적격 퇴직 연기금(이행규정 제 22조 제 1항 제 3호): 가. 거주자로서 미국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질 것 나. 주로 연금 또는 퇴직급여를 관리·제공하기 위해 운영될 것



소유자	12	정부단체 등	정부단체 등. 단, 특정보험회사, 수탁기관, 예금기관에서 수행하는 유형의 상업적 금융활동과 관련된 의무에서 파생된 지급에 대한 것은 제외(이행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13	다수참여/소수참여 퇴직펀드,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	다수참여 퇴직펀드, 소수참여 퇴직펀드,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이행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14	적용면제 실질소유자의 투자법인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가 완전히 소유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법인(이행규정 제22조제1항제4호) 가. 투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일 것 나.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만 직접 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것 다. 예금기관(투자법인에 대출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만 직접 법인의 채무지분을 소유할 것
	15	별정우체 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행규정 제22조제1항제5호)
공통 보고 기준의 목적상 비보고 금융회사*	16	면제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되는 투자단체로서, 모든 지분이 보고대상인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또는 보고대상인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을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를 말하며, 보고대상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제외한다.(이행규정 제21조제1항제3호, 제9항)
	17	국내지점 전용금융회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이행규정 제21조제12항제2호) 가. 국내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가를 받고 규제될 것 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 금융계좌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준수할 것 라. 금융회사가 외국에 설치한 해외법인 또는 지점이 없을 것 마. 조세의 원천징수 목적상 매년 금융계좌와 관련한 소득세를 징수하고 국세청에 보고 및 납부할 것
	18	기획재정부 장관 인정 금융회사	타국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우리나라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로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융회사(이행규정 제21조제12항제3호)
*이행간주금융회사 및 적용면제실질소유자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공통되는 기관은 상기 해당 내용 참조			